

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균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2조제2항
 -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
- 조례안 제4조제1항
 -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장 및 위원 구성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법 제32조제1항 각 호
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평창군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로 하며,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1. 『고등교육법』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에있는 자</p> <p>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</p> <p>3. 시민단체(『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자</p>	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다.</p>

4. 『건설기술관리법』에 의한

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『국

가기술자격법』 관련법령에 의

한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

5.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

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

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

학회에서 추천하는 자

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

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

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

과지식이 있는 자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
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② (생략)

제4조(기능) ① -----법 제
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-

-.

②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재무과장 정 성 문
연 락 처	(033)330-2270